

(사)대한화장품협회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여의도동, 금산빌딩)/전화 070-5057-4019/팩스 02-782-6659
담당부서: 국제협력실 부서장: 김경옥 실장 담당자: 한종민 대리 e-mail: jmhan@kcia.or.kr

직인생략

대한장협: 제11-344호

시행일자: 2023.12.4.

수신자: 화장품 제조업자 및
책임판매업자 대표이사

참 조

제 목: 「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(민원인 안내서)」 개정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-7846호(2023.11.30.)관련입니다.
3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업계의 광고 업무 지원 및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「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(민원인 안내서)」을 운영하고 있는 바, 추출물 화장품의 성분 표시·광고 지침을 추가하여 소비자 보호 및 표시·광고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·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추출물 화장품의 표시·광고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- 아 래 -

가. 시행시기 : 즉시 시행

나. 기존 포장재에 대한 예외적 허용

- 포장재의 신규 제작 기간 소요 및 폐기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(23.11.23.) 이전에 제작된 포장재는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

붙임: 「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(민원인안내서)」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